

투자청 고시
제Por.1/2565호

투자위원회 고시 제4/2564호 발표에 따른 권리와 혜택을 받아볼 수 없는 활동에 관한 안내

2021년 3월 19일자 투자위원회 고시 제4/2564호 '디지털 기술 도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'과 관련하여, 투자청은 불기 2520년(1977년) 투자촉진법 제13조, 제16조 및 제18조에 의거하여 해당 고시에 따른 추가 권리와 혜택을 받아볼 수 없는 사업들에 다음의 유형들이 포함되었음을 알리는 바이다.

- | | |
|--------------|---|
| 액티비티 1.23 | 현대 농업과 관련한 농산품 또는 서비스 생산
예) 이상 감지 또는 기타 상황 추적 시스템, 자원 관리 시스템(물, 비료, 의약품) 및 스마트 그린하우스 시스템 |
| 액티비티 4.11.6 | 항공운영시스템
예) 검색, 탐지, 네비게이션, 지표(guidance), 항공, 우주항법 시스템, 계기판 등 |
| 액티비티 4.22.2 | 시뮬레이션 및 영상 훈련
예) 전투 차량, 무기 훈련장 시스템 (Personal and unit weapon training field system), 합동작전연습모델(JTLS: Joint Theater Level Simulation Systems) 등과 같은 가상훈련 시스템(virtual training facilitating system) |
| 액티비티 5.7 | 소프트웨어 |
| 액티비티 5.9 | 디지털 서비스 |
| 액티비티 5.10 | 디지털 서비스 또는 디지털 콘텐츠용 소프트웨어, 플랫폼 개발 |
| 액티비티 7.9.2.3 | 데이터 센터 |
| 액티비티 7.9.3 | 스마트 산업단지 또는 산업구역 |
| 액티비티 7.10 | 클라우드 서비스 |
| 액티비티 7.31 | 스마트 시티 지역 개발 |
| 액티비티 7.32 | 스마트 시티 시스템 개발 |
| 액티비티 7.33 | 스마트 시스템을 갖춘 물류 센터 |
| 액티비티 8.1.4 | 디지털 기술 개발 |

고시일 2022년 1월 20일

(Ms. Duangjai Asawachintachit)

투자청장